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김천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5. 6.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 위법 부당관리**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한 서식 4호(규칙 별지 9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관리에 관한 카드에 재난관리책임자,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등을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붕괴 등 긴급재난발생시 재난대비체제(비상연락망)를 활용 전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김천시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304	304	124	176	4			
시설물	35	35	1	30	4			
건축물	269	269	123	146				

그런데도 김천시(✈✈✈✈과, ✉✉과 등)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304개소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를 기록·유지함에 있어 2005.12.31이전 구 지침에 따른 대장만 작성하고 2006.01.0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바뀐 지침에 따른 긴급안전점

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에 재난관리책임자 3명, 위치도, 안전점검내용 및 결과, 유관기관·단체(소방, 경찰, 한전, 통신, 가스,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재난 시 김천시민의 안전을 대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하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관리대상시설(아파트, 연립주택) 관리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A, B, C등급으로 구분하여 2년에 1회 안전점검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 지침에서는 아파트(5층~15층 이하) 및 연립주택(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김천시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지정 ·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시설유형	지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관리시설	미지정 시설			비고
			시설수	세대수	주민수	
계	126	102	24	3,910	7,833	
아파트	83	76	7	3,683	7,245	
연립주택	43	26	17	227	588	

그런데도 김천시(☏☏☏☏과)에서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일제·수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입력하고 시설물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에 따라 중점관리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24개소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누락하여 2년에 1회식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여 위 공동주택에 24개소에 거주하는 김천시민 7,833명에 대한 재산과 생명에 대한 재난예방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미이행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ΩΩΩΩ국 ㅇㅇ과

내 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6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시특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은 별표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ㅇㅇ과)에서는 2013~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시특법에 의한 1 · 2종 시설물인 ○○○○○등 65개소에 대하여 총 248회 정기점검 중 65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시한 188회 모두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책임기술자 자격이 없는 각 부서 기술직공무원들이 점검보고서나 출장복명서 없이 점검유무만 관리시스템(fms시스템)에 기록하였고, 시특법 2종 시설 6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

공 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중 53개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 구분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천시(ㅇㅇ과)에서는 시특법 제6조에서 정하는 2~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정밀안전점검을 준공 후 65개소에 대하여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지 않았으며, 시특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인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적정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특법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등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②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군도00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일시정지 소홀 등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2012.04.24. ㈜⌒⌒⌒⌒건설 ᕗᕗᕗ과 ●● ~ ●● (군도00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을 맺어 2012.05.09. 착공하여 2014.12.20.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정지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인공구조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시에는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군도00호)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기한(2014.12.20.) 15일을 남겨둔 2014.12.05.에 00읍 ♪♪리 주민들이 공사 종점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시거확보를 위한 건물 추가 매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건물에 대한 매입 등을 검토한다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하고, 시공사에서는 공기 만회를 위하여 공사정지 기간 중 시공을 계속하여 공기를 만회하는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사업구간 내 교량 2개소(♬♬교, ♬♬♬교)는 하천점용 허가 시 협의한 설치도면과 다르게 설치(사각변경, 하상계획고 변경 등)하였음에도 변경협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종점부에 위치한 암거개체 시에는 하천점용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현장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 순환골재 1,038㎥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1회 설계 변경 시 임의로 삭제하고 혼합쇄석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하여 00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은 하천관리부서로 하여금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설치공사 목적과 무관한 사급자재대 계상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2014.10.15. ✈✈✈✈(주) ✉✉✉과 🍎🍎🍎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2014.10.21. 착공하여 2015.12.27.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지여건상 설치할 당위성이 없는 가로등 50본을 임의로 사급자재대에 반영하여 도급자에게 000백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당 집행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부당하게 계상된 사업비 000백만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조성공사 기성검사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2013.12.05. 𝄞𝄞𝄞𝄞건설(주) ♬♬♬와 계약을 맺어 ☎☎ ☍☍☍☍ ☞☞☞☞(□□□) 조성공사를 2015.05.01.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기성대가 지급 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공, 우수공 등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도서를 변경 확정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06.23. 시공사로부터 기성검사원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기성 내역을 보면 토사 4,396㎥를 사토처리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후(2014. 12.26.) 시행한 1회 변경 설계서를 보면 사토량이 1,631㎥가 감소되어 전체 토사 사토량은 2,765㎥로 1회 기성 처리한 사토물량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김천시 ✙✙✙✙✙✙✙과에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도서를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물량을 확정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임의로 기성내역이 작성되었음에도 사토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추진 업무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2014.04.03. ㈜☞☞☞☞건설 대표 ☟☟☟과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 ✌✌✌✌를 2015.1.28. 준공하였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관내 ❑❑동 0-0번지 상에 사업비 0,000 백만원으로 ✉✉✉✉✉ ✌✌✌✌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철골공사 중 고장력볼트의 경우 조임 방법의 변경으로 철골세우기시의 조임만으로도 충분하여 본조임(293ton)이 불필요함에도 계상하였고, 외장공사 중 알루미늄복합판넬 공사의 경우 자재조달 및 시공까지 모든 공정이 별도업체에서 시행되는 견적공사로서 공사비 전부가 재료비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따로 분류되어 제경비가 과다계상 되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과다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설계변경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과

내 용

김천시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 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생태체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중 공사의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규정」의 설계변경요건은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2호에 의거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 물량 내역서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부 공종(비목)에 대하여 단가산출시 단순히 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 시행 중 본 공사구간 조경시설의 석재계단 설치 공종의 단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단가에 대하여는 최초 설계의 공사예정가격 산정시 잘못(과소)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변경계약 증액 할 수 없음에도 부적정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에게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공사비 만큼 부당 증액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부당하게 증액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홀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김천시 ♪♪♪♪국 ☎☎☎☎☎☎☎☎☎

내 용

김천시 ☎☎☎☎☎☎☎☎☎에서는 2013.12.05. ●●건설(주) ✈✈✈과 ✉✉✉ □□□□□□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000천 원)을 맺고 2013.12.11. 착공하여 2015.10.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천시 ☎☎☎☎☎☎☎☎☎에서는 연약지반 침하를 위한 여성토 물량을 인근사업장인 ✉✉✉ □□□□□□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 9,405㎥, 발파암 45,060㎥를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반영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사 20,000㎥(증10,595㎥), 발파암 34,465㎥ (감10,595㎥)를 반입하고도 감사일 현재 사업비 00,000천 원을 감액조치 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① 여성토 물량을 시공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변경하여 사업비 00,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